

●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797호

산업단지 진입도로 타당성평가 전문기관 지정

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9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에 따라 신규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·고시합니다.

2022년 12월 26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신규 산업단지 진입도로 타당성 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목적

-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9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에 따른 신규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사업의 타당성 평가 관련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을 지정·운영

2. 지정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

- 국토연구원
 - (대표자) 강 현 수
 - (주 소)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
 - (위탁업무)
 - ① 「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」 제15 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원기준 및 적정여부 등을 타당성 평가(검증)
 - ②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대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검증
 - ③ 산업단지 지정(변경)고시, 실시계획(변경) 승인 여부
 - ④ 총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18조에 따른 계획타당성 평가 실시 등

3. 지정 기간

- 2023. 2 ~ 2028. 1 (5년간)